

보험범죄의 위험성과 대책

신 의 기*

국문요약

보험제도를 악용한 보험범죄는 위험에 대한 보장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선진국형 범죄로 우리나라도 선진사회에 진입하면서 보험범죄가 날로 늘어나고 있다. 보험범죄는 일반인이 큰 죄의식을 가지지 않고 저지를 수 있는 범죄로 보험범죄를 막는 것은 보험경영자의 이익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와 국가경제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보험범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보험범죄는 법률상의 용어가 아니라 보험과 관련된 범죄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로, 사기죄가 성립할 정도의 적극적인 고의 또는 기망행위가 수반되지는 않으나 보험금을 부당하게 취득하기 위한 행위인 보험사기와 보험사기를 위해 행하는 살인, 강도 등의 모든 범죄를 포함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보험범죄의 특징을 보면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이에 편승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적극성이 떨어지는 연성 보험사기를 제외할 경우 일반범죄 행위와는 달리 사전에 치밀한 계획에 따라 범죄를 저지르고, 죄의식이 결여되어 있으며, 고의의 입증이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보험범죄의 특징을 파악하고 보험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미비되어 있는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보험사와 수사기관의 협조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검찰과 경찰에 보험범죄를 전담하는 부서를 두어 수사를 전문화할 필요가 있으며, 범죄예방과 적발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정보공유가 필요하다.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법학박사

I. 시작하는 글

보험제도는 현대사회의 위험을 분산시키는 제도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보험이란 ‘동일한 위험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하나의 위험단체를 구성하여 통계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각자가 내어 기금을 마련하고,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금전을 지급하여 경제생활의 불안을 없애거나 줄이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사회의 발달과 함께 위험의 종류도 많아지고 위험을 예측하는 기법도 발달하면서 보험의 종류도 많아지고 정책적 필요 때문에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과 같은 공보험과 자동차보험처럼 반드시 가입하게 하는 강제보험도 등장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장치에는 역기능이 있으며, 보험제도도 예외가 아니다. 보험의 역기능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보험과 관련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보험과 관련한 범죄는 보험제도를 악용하여 부당하게 보험혜택을 받아내기 위한 것으로 보험사고를 고의로 일으키거나,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허위, 과장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수취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보험범죄는 보험금을 받기 위한 범죄이기 때문에 보험의 피보험자나 피보험자와 관계되는 자가 저지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피보험자는 대부분 가족이기 때문에 보험범죄는 보험가입자와 피보험자가 공모하거나, 가족간에 벌어지는 반인륜적 범죄인 경우가 많다.

보험범죄가 가능한 것은 보험계약의 성격 때문이다. 보험계약은 장래의 불확실한 사고발생 여부에 보험자의 책임이 따르는 사행계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상 보험가입자가 내는 보험료는 소액이지만,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지급받는 보험금은 높은 금액이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를 이용한 범죄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보험계약에 있어서는 보험사고발생의 객체(손해보험의 보험목적, 인보험의 피보험자)가 처해 있는 위험상황은 가입자측이 가장 잘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보험거래를 대량적으로 처리하는 보험자는 개별적 위험상황을 완전히 파악할 수 없으며, 통계에 의해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따라서 악의적 보험가입자에 대하여는 약점을 지닐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 때문에 보험제도를 역

이용하려는 사람은 항상 존재한다. 보험제도를 역이용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가입자가 위험을 逆選擇(adverse selection)¹⁾하여 제도를 악용하거나 고의는 없었으나 우연히 발생한 손해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있다. 그 유형은 첫째, 보험가입단계에서 사고발생 후 보험에 가입하거나, 위험에 관한 중요정보를 은닉하거나 부실정보를 제공하거나, 보험금액을 과다하게 약정하는 경우, 둘째, 의도적으로 보험사고를 내고 우연한 사고로 위장하거나 증거를 인멸하고 사고조사를 방해하는 경우, 셋째, 보험금청구시 손해액을 과대평가하여 과도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등이다. 이처럼 부당하게 보험금을 받으려는 행위 일체가 보험범죄로 볼 수 있다.

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2006년에 보험사기는 34,567건이 적발되었고 적발금액은 약 2,489억에 달하고 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각각 49.8%, 38.1% 증가한 것으로 보험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²⁾ 문제는 이러한 증가가 한 해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보험범죄의 증가경향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로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경우에는 이미 오래 전에 보험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으며, 보험제도의 발달과 함께 우리나라도 보험범죄가 문제되고 있는 것이다. 보험범죄는 보험제도가 잘 발달된 국가에서 일어나는 선진국형 범죄로 우리나라가 선진화되면서 문제되기 시작한 것이다.

보험범죄를 막는 것은 보험경영자의 이익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국민 경제와 국가경제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보험범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보험범죄는 일반인이 큰 죄의식을 가지지 않고 저지를 수 있는 범죄의 하나이다. 보험금을 더 받기 위해 사고시 허위진단을 유도하고, 입원치료의 필요가 없는데도 계속 치료하는 행위는 주위에서 흔히 경험한 일이며, 이러한 행위가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의식도 거의 없는 상황이다. 보험범죄는 피해자 없는 범죄로 생각하기 쉽다. 보험

1) 역선택이란 보험자에게 불리한 보험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을 보험계약자가 자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선택함을 가리킨다. 생명보험에서는 건강에 자신이 없는 사람이나 위험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리고 손해보험에서는 불량위험의 소유자가 자진해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를 말한다.

2)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http://www.fss.or.kr>, 2007. 2.

회사의 돈을 사취하는 것은 큰 죄의식 없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유형은 손실의 규모를 과장하여 청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교통사고의 경우 병원의 과잉진료 및 진료비 과다청구, 피해자의 손실 이상의 보상요구, 자동차 수리업소의 허위수리 및 과잉수리 등은 보험금 과다청구의 대표적인 경우이다. 이와 같은 보험금의 과다지급은 보험료의 인상을 불러오기 때문에 보험이 가지는 공공적 성격을 감안할 때 보험범죄의 피해자는 결국 모든 국민이 되는 것이다.

II. 보험범죄의 의의와 보호법익

1. 보험범죄의 의의

보험범죄는 법률상의 용어가 아니라 보험과 관련된 범죄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이다. 기존에 널리 쓰던 용어인 보험사기는 형법 347조의 사기죄가 성립할 정도의 적극적인 고의 또는 기망행위가 수반되지 않으나 보험금을 부당하게 취득하려는 행위를 포함하는 용어로 사용하였다. 즉 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고지의무 위반행위도 넓은 의미에서는 보험사기에 해당하는 것이다. 적극성의 강도에 따라 보험사기를 연성사기(soft fraud)와 경성사기(hard fraud)로 구분하기도 한다. 경성사기는 계획적이며 의도적인 보험사기행위이며 당사자의 고의성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범죄행위로 사법기관의 수사를 통한 처벌이 필요한 유형이다. 이에 비하여 연성사기는 계획하거나 의도하지는 않았으나 보험사고 발생 시 적법한 보험금청구권을 이용하여 보험금을 부당하게 편취하려는 행위를 말하며 행위자의 죄의식이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³⁾

보험범죄는 보험계약관계자의 이익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를 통칭하는 것으로 범죄성을 강조한 것이다. 보험범죄란 ‘보험가입자 또는 제3자가 받을 수 없는 보험보호를 거저 얻거나, 부당하게 낮은 보험

3) 황만성·신의기·탁희성, 우리나라 보험사기 방지 선진화 방향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 103면.

료를 지불하거나, 또는 부당하게 높은 보험금액의 지급을 요구할 목적을 가지고 고의적이며 악의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⁴⁾ 같은 맥락에서 어떤 사람이 보험계약을 이용하여 보험회사의 부담으로 자기 또는 제3자에게 보험금의 형식으로 위법적인 이익을 보게 하는 행위를 보험범죄라 한다.⁵⁾ 이러한 행위가 처벌되기 위해서는 법적 비난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보험과 관련하여 불법적인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는 가입시의 과실에 의한 고지의무 위반을 제외하고는 과실이나 우발적으로 행해지는 경우는 드물다. 이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불법적으로 보험금을 노린 행위는 대부분 계획적·고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유책성을 확인하는 것은 별 어려움이 없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고의적으로 보험금을 부당하게 편취하기 위한 행위를 보험범죄라고 한다.

2. 보험범죄의 보호범의

보험범죄로 인하여 발생하는 직접적인 피해는 보험계약관계자 당사자들의 생명과 재산적 침해이다. 따라서 보험범죄에서 일차적으로 보호되는 법익은 보험계약당사자들의 생명과 재산이다. 보험범죄로 인한 피해는 보험의 수혜자가 가족이나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란 특성상 다른 재산범과는 뚜렷이 대비된다. 보험범죄는 가정과 인륜을 파괴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보험범죄로 지급된 보험금의 누수는 보험제도의 원리에 따라서 보험료가 인상되어 일반계약자들은 더 많은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하며, 보험가입자들이 받아야 할 배당금 등의 잉여금에서 손해가 발생함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범위가 전체 보험계약자에게 나타난다. 따라서 전체 보험계약자의 재산적 침해에 대하여도 형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법익이다. 이 밖에 보험은 투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⁶⁾ 따라서 보험시장의 신뢰성 여부는 보험범죄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배제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보험시장의 신뢰성은 국민경제적이나 사회보장적

4) 조해균, “도덕적위험과 보험범죄,” 보험조사월보, 제141호, 1989. 11, 7면.

5) 문국진, “보험범죄의 특징,” 손해보험, 대한손해보험협회, 1997. 12, 108면.

6) 판례는 보험계약상 보험자의 급여의무는 미리 보험자가 보험료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연한 사고가 생긴 때에만 발생하므로 보험계약은 射倖契約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도565 판결.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보험의 공정한 거래질서가 또 하나의 보호법익이라고 할 수 있다.

보험범죄자의 행위는 결국 선의의 보험계약자들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 보험금의 사취행위는 일반 보험계약자의 보험료를 인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고 결국 피해는 선의의 계약자에게 돌아가게 되며, 강제보험과 공보험에서는 선의의 계약자는 결국 국민으로,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된다. 따라서 보험범죄의 보호법익으로 일반인의 재산상의 피해와 신뢰도 보호법익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처럼 보험범죄는 기존에 생각하던 것처럼 단순히 개인의 재산에 대한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보험제도 자체에 대한 위협이 된다는 점에서 보험범죄를 단순히 재산문제에 국한할 수는 없으며, 사회적 안정을 해친다는 점에서 보험범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Ⅲ. 보험범죄의 특성

보험범죄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보험범죄를 막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범죄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효과적으로 보험범죄를 막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작업 중의 하나이다. 보험은 불확실한 사고를 담보위험으로 하고 있어 보험범죄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새로운 기법들도 개발되고 있으나 보험범죄는 공통적인 특성과 성격을 가지고 있다.

1. 계획적 범죄성

보험범죄는 보험사고를 의도하지 않았던 연성 보험사기를 제외할 경우 일반범죄 행위와는 달리 사전에 치밀한 계획에 따라 범죄를 저지른다는 특징이 있다. 보험을 매개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제도를 악용하기 위해서는 보험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보험약관의 내용, 보험관련 법규에 대한 규정을 잘 알고 있으며 이를 역이용할 수 있을 정도의 지식이 필요하며, 범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범행을 통하여 받을 수 있는 보험금액을 비교하여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게 된다. 그래서 우선적 대상이 되는 것이 보험가입자의 경제력에 비해 보험금액이 고액인 보험금을 대상으로 하게 되며, 보험범죄가 발각되지 않도록 조사요원의 조사 및 손해사정업무를 소홀히 하는 보험회사들을 주로 선택하게 된다는 점에서 보험범죄는 사전준비가 필요한 계획적 범죄성을 가지게 된다. 보험범죄는 고도의 지능성이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으나, 고도의 지능까지는 요구되지 않으며, 일반인이 필요에 따라 보험지식을 습득하는 정도로도 보험범죄는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2. 죄의식의 결여

보험범죄자들은 죄의식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다. 적극적으로 보험범죄를 저지르지는 않더라도 교통사고 발생시 아픈 곳이 없어도 장기간 입원하는 등 소극적으로는 보험제도를 악용하려는 경향이 있다. 특히 공적보험의 경우 국가의 복지정책으로 생각하고 별다른 죄의식 없이 그 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범죄로 여기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공보험범죄의 경우 관리공단이나 감독기관에서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보험요율의 인상 등으로 국민의 부담의 증가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범죄의 방지에 나서지 않고 있다. 의료기관의 부정청구도 늘어나 감기나 소화불량 환자 8,000여명을 인격장애, 강박장애 등의 정신질환자로 둔갑시켜 6개월에 걸쳐 약 4억 5천만원의 부정청구를 하는 경우가 적발되기도 하는 등 전문직 종사자들을 포함한 보험금 부정급여를 노린 행위가 계속 적발되고 있어,⁷⁾ 우리나라의 보험범죄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보험범죄자는 다른 범죄자와는 달리 자신이 얻으려는 이득이 부당한 이득이라는 것은 인식하지만 죄의식을 별로 느끼지 않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죄의식의 결여는 보험범죄에 대한 관용적 사회분위기와의 관계가 있다. 부당급여 신청, 사고과장 등 기회사기에 대하여 대부분의 사람이 죄의식을 크게 느끼지 않고 유혹을 느끼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에 대해 부정적이고, 보험사는 영업중심의 정책마인드 때문

7) 보건복지부, 허위·부정청구 요양기관 사례, 2003년 국정감사자료, 2003, 2면.

에 조용하게 처리되기를 바라는 풍토도 일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조직적 범죄성

보험범죄는 단독범인 경우도 있으나 주로 2인 이상의 공범에 의한 범죄행위가 많다. 예를 들면, 가족이나 친족을 참여시킨다거나 주위에 있는 이해관계인을 끌어들이는데, 이것은 보험사고를 위장하거나 범인 자신이 범죄혐의로부터 벗어나게 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은 고액이거나 여러 보험사에 수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범죄를 야기하며 동시에 여러 가지 범죄행위를 유발하게 되며, 돌아가면서 역할을 바꾸어 계속적으로 범죄를 하게 된다.

이렇게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내부종사자의 묵인, 방조, 공모행위가 없이는 성공하기 어려워 이들의 협조가 필요하다. 특히 보상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보험상품의 특성상 상품정보와 보험사의 사정을 아는 모집종사자들의 개입 없이 계속적, 조직적 범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부종사자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는 실적경쟁과 비용절감 노력 등과 형식적인 사내교육 및 구상제도의 미비 등의 복잡한 요인으로 보험모집 종사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낳고 있다. 보험모집인 뿐만 아니라 경영합리화를 명분으로 한 구조조정은 보상이나 손해사정 직원의 조직충성도를 약화시켜 범죄유혹에 쉽게 빠지게 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어 내부 직원들의 공모가 점점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4. 혐의 입증의 어려움

보험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이득을 얻기 위해 고의로 행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고의를 입증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특히 오늘날 가장 문제가 되는 자동차사고의 경우 고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으며, 특히 수사권이 없는 보험사가 고의를 입증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월수입보다 많은 금액을 월보험료로 납부한 가입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보험료의 지급의무가 있느냐가 문제되기도 하였다.⁸⁾

혐의 입증의 어려움은 보험관련 기관간의 정보공유가 되지 않아 더욱 가중되는 경우가 있다. 각 기관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과 정보의 공유를 꺼리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태도 때문에 정보수집과 공유가 어려운 상황은 범죄혐의의 입증을 더욱 힘들게 하는 주요한 원인이 된다. 아울러 경·요추 염좌 등에 대한 진단의 주관성, 보험범죄 전문수사 인력의 부재, 목격자 신고율 저하 등도 혐의입증을 어렵게 하는 요인들이다.

5. 피해의 간접성, 광범위성

보험범죄는 외견상 보험사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것 같지만, 보험료 인상을 통해 피해 주체의 전이, 즉 피해당사자가 현재 보험계약자 뿐만 아니라 미래의 보험계약자에게까지 확산된다. 보험료 인상은 즉각적으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험사는 보험사기 및 범죄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현재 및 미래의 보험계약자는 보험료 인상을 통해 간접적인 피해를 입는 것이다.

보험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다른 범죄와 같이 일차적인 피해자이고, 다음으로는 보험회사도 피해를 본다. 그리고 결국은 범죄와 관계없는 다수의 보험계약자에게도 피해의 영향을 미친다. 보험범죄에 의해 발생한 피해금액은 결국 선량한 일반 국민에게 돌아간다. 보험범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그 비용을 계산하여 보험료를 인상하게 되고 새로운 보험계약은 인상된 보험료로 계약하게 된다. 미국 보험범죄국(NICB)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한 가구당 보험범죄로 인한 손실을 충당하기 위하여 연간 200달러를 추가 보험료로 지불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⁹⁾ 미국보험자연맹은 범죄로 인한 비용은 연간 미국 가사비용인 167달러와 같다고 한다.¹⁰⁾

보험범죄는 경제범죄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경제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8) 1997년 6월 17개 보험사에 46건의 보험에 가입한 후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의 경우, 보험사들은 자신의 월급여의 2배에 이르는 보험금을 납입한 점 등을 들어 자살의 의혹을 제기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경우가 있다.

9) "Insurance Fraud : The \$20 Billion Disaster" Insurance Fraud Facts, 1997 NICB; [http://www.nicb.org/reportripoff/factpages/insuranceFraud Overview.html](http://www.nicb.org/reportripoff/factpages/insuranceFraud%20Overview.html).

10) Carris, Richard·Colin, Michael A, "Insurance Fraud and the Industry Response," *CPUD Journal*, Summer 1997, p.92.

특정되지 않거나 일반 국민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자기가 피해자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한다. 그래서 경제범죄는 피해자의 집합성과 불특정성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피해의식이 거의 없다. 즉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피해자가 되는 것이 특징이 된다. 보험범죄도 경제범죄의 하나로 중국적으로는 일반 보험계약자가 피해자가 되고 나아가 국민전체가 피해자가 된다. 오늘날 보험은 생활에 필수적이며, 강제적 성격의 보험이 늘어나면서 범죄로 인하여 보험료의 상승은 국민경제에 미치게 된다.

IV. 보험범죄 방지를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

1. 법적 개선방안

가. 보험범죄에 대한 처벌조항의 신설

보험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보험범죄의 유형을 분석하고 유형별 특성에 따라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법적·제도적 장치를 둘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형법상 사기죄와 특정경제가중처벌상에만 보험범죄 처벌규정이 있어 보험범죄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보험범죄는 경제의 사회의 발달에 따라 발생하는 범죄로 경제범죄의 양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보험범죄에 대한 처벌조항의 신설은 보험범죄에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이해관계자에게 보험범죄 내지 보험사기의 위법성을 분명하게 인식시켜 범죄를 억제하기 위한 형사정책상의 고려에서도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보험사기는 단순히 보험금의 사취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주게 됨은 물론 경제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기 때문이다.¹¹⁾

이에 대한 방안으로 보험학계에서는 보험사기방지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다.¹²⁾ 보험사기방지법을 제정하여 보험사기의 정의 및 범

11) 황만성·신의기·탁희성, 우리나라 보험사기 방지 선진화 방향 연구, 55면.

위, 보험사기조사국, 보험사기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보험사업자에 대한 규제, 각종 보고서 제출의무 및 내용, 면책권에 관한 사항, 자료제출의무에 대한 사항 등이 포함하여야 한다. 보험사기를 방지하고 피해에 대한 원상복구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는 처벌규정에 형사적 처벌 뿐 아니라 민사적 제재에 관한 규정도 둘 필요가 있다. 또한 민영보험 분야에서는 보험감독당국 그리고 사회보험분야에서는 보건복지부 등이 각기 보험사기를 전담하는 보험사기조사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보험사기조사국이 법적 근거를 가지고 사기혐의자들에 대한 조사권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의견은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에서 2001년 21개의 생명보험회사 및 12개의 손해보험회사 등 총 33개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난다. 이 설문조사에서는 국내의 보험회사는 ‘보험사기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에 대해 약 97.0%가 그 필요성을 그리고 ‘감독당국내 보험사기방지국의 설치’에 대해서는 약 66.7%가 그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또 보험범죄 내지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경우에도 보험사기방지법 등 단행 독립법률의 제정을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약 69.7%).¹³⁾

다른 한편으로는 형법이나 보험관련법규에 보험범죄에 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¹⁴⁾ 형법의 개정은 쉽지 않기 때문에 점차 증가하는 보험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현행 보험관련법규에 보험범죄에 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고 각 행위불법에 부합하는 형벌을 부과하는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보다 실효성이 있다는 주장이 있다.¹⁵⁾ 그러나 기존 형법조항과 중복되는 부분, 특별법에 의해 가중처벌¹⁶⁾

12) 안철경·박일용, 보험사기 적발 및 방지방안, 127면 이하; 조해균·양왕승, 범 국가적 차원의 보험사기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184면.

13)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보험사기관리, 2001. 12, 51면 이하.

14) 이병희, 보험범죄론, 198면; 탁희성, 보험범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145면 이하.

15) 탁희성, 보험범죄에 관한 연구, 146면.

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 과에서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및 같은 조 제2호 다에서는 “보험료”라고 명시하고 있어, 보험범죄는 일정한 경우 특정경제범죄로 이 법에 따라 가중처벌 될 수 있다. 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형법 제347조(사기)·제350조(공갈)·제351조(제347조 및 제350조의 상습범에 한한다)·제355조(횡령·배임) 또는 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되는 부분 등과의 관계를 살펴본다면, 현행 형법(제347조 이하)에 보험사기나 보험악용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어느 방법이든 보험범죄의 처벌규정을 신설하는데 있어서는 주의할 점이 있다. 명확하게 개념정의가 되어 있지 않은 보험범죄라고 하는 용어의 정의와 보험범죄로 포괄할 수 있는 불법행위의 범주를 설정하고, 보험범죄의 유형을 세분화하여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보험범죄의 유형에 따른 형사법적 제재의 경중을 정하고 형법과 중복되는 범죄유형에 대해서는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형벌과 균형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형을 가중·감경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보험범죄에 대한 적절한 형량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종래 우리나라 법원에서 보험범죄에 대한 양형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형량의 조정

보험범죄에 대해서 엄벌규정을 둔다고 해서 반드시 효과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형량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기준이 보험사기의 경우 지나치게 높아 실제 적용사례가 거의 없으므로 하향조정이 필요하며,¹⁷⁾ 조직적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가담정도에 따라 가중처벌을 하는 등 실효적인 처벌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또한 소극적 보험범죄에 대해서도 경우에 따라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인권침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보험범죄는 현행법상으로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범한 자는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17) 양형 실무상으로도 5년 이상의 징역형을 규정할 경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경우가 많다. 마약범죄의 경우 단순운반의 경우에도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통상 1년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받는 단순투약사범과의 균형상 상 작량감경을 하여도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해야 하기 때문에 너무 형이 높아 실제로는 2년 6월의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대부분으로 지나치게 높은 법정형은 오히려 문제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보험범죄의 경우 실형선고율이 60%대에 머물고 있고, 실형선고자의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실형선고자가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지나치게 높은 법정형은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황만성·신의기·탁희성, 우리나라 보험사기 방지 선진화 방향 연구, 57면 이하.

에 처할 수 있지만, 실제로 법원에서 선고되는 형량은 실형 1년 이하인 경우가 64%에 이르고 있다. 이는 특별법에 의한 형량의 가중만이 보험범죄의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인다.¹⁸⁾

그러므로 법정형의 가중 이외에 보험범죄의 행위유형을 명확하게 법률에 규정하고 보험범죄의 행위태양이나 조직적 가담의 정도 등에 따른 차별화와 더불어 형벌의 신속·엄정·공정한 집행을 통하여 보험범죄 관련 법규의 규범력을 높이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즉, 보험범죄를 저지르면 그에 따른 형사처벌을 반드시 받게 된다는 것을 통하여 보험범죄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을 전환토록 유도하고 이를 통하여 보험범죄에 대한 일반예방효과 및 특별예방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소극적 보험범죄를 처벌할 경우 지나치게 보험사나 보험관리공단 편의 위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치료받아야 할 환자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개인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일견 퇴원이 필요한 환자로 보이더라도 계속 입원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이를 판단하게 하는 등 환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보상금의 산정 등에서도 제도적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험범죄의 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비상식적이고 엽기적인 보험범죄가 빈발하고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대형화, 조직화, 지능화되면서 경제, 사회에 미치는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소극적인 보험범죄에 대한 규정을 두는 방안도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보험범죄의 특성과 최근의 추세에 비추어 볼 때, 보험범죄에 대한 형벌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의 보험범죄에 따라 다르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생계형 보험범죄인 경우에는 이미 법정형이 충분히 높이 책정되어 있으므로 실제의 수사나 재판에서 이를 고려하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생계형 보험범죄의 경우에도 그 편취금액이 과도한 경우에는 현재의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조문으로도 가중처벌할 수 있으므로 편취금액의 경중에 따른 적정한 양형은 현재의 법률로도 충분하

18) 물론, 법정형의 경중에 따라 사물관할이 달라지거나 구속기준, 검찰의 구형기준 등이 달라짐으로 인하여 형사절차의 진행과정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법원의 선고형 자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기에 는 무리가 있다.

다고 생각된다. 이 경우 현행법상 보험범죄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보험범죄의 개념 및 그 행위유형 등을 형법이나 보험업법 등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보험범죄에 관하여는 이에 대한 새로운 대처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폭력조직이 개입하거나 치밀하게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험범죄에 대하여는 범죄의 공모의 정도, 주도적 역할의 여부 등에 따라 형벌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개정은 이러한 조직적 보험범죄의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V. 보험범죄에 대한 수사체계의 합리화

1. 현행 보험범죄에 대한 조사체계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나 보험사업자가 사고 발생원인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보험사고 조사는 보험에 대한 보험금 청구가 접수되었을 경우에 적법한 보험사고가 아닌 사기적인 사건을 발견하기 위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보험사고 조사는 보험범죄를 적발하고 방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보험사고 조사는 경찰의 수사와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살인사건 등은 수사가 진행될 때 보험과의 연계성을 추적하게 된다. 조사의 필요성이 있는 보험사고는 범죄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 국한된다.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사고조사는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고액의 생명보험계약이 피해자의 사망직전에 체결되었거나, 생명보험의 수익자가 피보험자의 친족 이외의 자이거나, 수익자가 계약체결 후 변경된 경우 등에는 조사할 필요가 있다.

보험범죄의 대상이 되는 계약은 대부분 보험금이 고액이고, 재해특약이 있고, 보험가입 후 보통 6개월 이내에 다수 발생한다. 보험범죄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는 보험계약자, 보험수익자, 피의자 등의 상황 예컨대 모

집인이 권유하지 않은 자진가입 등 보험가입 상황이나 보험금액 및 가정 환경 등을 조사해야 한다. 또 계약체결일로부터 피보험자의 사망시까지의 기간이나 보험관계자의 주변 및 배후관계 등을 조사해야 하며, 이 조사에는 보험사와 경찰간의 유기적 협조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험범죄에 대한 전문적인 수사를 하는 조직이 없다. 마약이나 조직폭력 등에 대해서는 검찰이나 경찰에서 전담수사조직을 두고 있으나, 보험범죄에 대한 전문수사조직은 없다. 경찰에서는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를 중심으로 손해보험협회의 건의에 따라 기획수사가 연 1-2회 정도 이루어지고 있으며,¹⁹⁾ 보험범죄 아카데미를 개설하여 수사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경찰청은 보험범죄에 대한 기획수사를 통하여 보험범죄의 심각성을 새로이 인식하게 되었고 2001년 8월 전국 경찰관서에 보험사기 수사전담반을 편성하도록 지시하였으나, 다른 사건까지 맡고 있어 보험범죄만을 전담하지는 않고 있다.

수사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에서 보험범죄 혐의를 조사할 수 있는 기구로는 보험업법에 근거한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와 기타 사회보험관련법에 의한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관리공단), 노동부(근로복지공단)가 있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를 조사하고 그 대책을 마련·추진하는 별도의 전담조직으로 조사3국을 설치하였으며, 이 조직은 이후 보험조사실로 개편되었다. 그러나 이들 기관은 수사권은 없고 단지 행정조사권만을 보유하고 있고 그 권한도 제한적이어서 보험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수사의뢰를 하더라도 전담수사부서가 없어서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다른 사회보험관련 감독조사기관도 마찬가지로의 행정조사권이 있으나 보험범죄에 대한 적발 및 형사처벌에 대한 노력이 금융감독원보다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가 하는 사고조사의 법적인 근거는 생명보험표준약관이다. 여기에는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와 관련하여 의

19) 손해보험협회는 보험범죄의 근절을 위하여 경찰청과 수사 업무 협의를 통하여 2001년부터 지능범죄수사과 주관으로 매년 1-2회에 걸쳐 공익범죄 근절 차원에서 실시되는 보험범죄 기획수사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상세한 것은 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60년사 참조.

료기관 또는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조사에 동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²⁰⁾ 이 규정에 의거하여 보험범죄의 방지를 위하여 보험사와 금융감독원 등 관련기구에서 다양한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 보험범죄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직접적인 손해를 보게 되는 각 보험사별로 보험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은 주로 손해조사 및 손해사정업무를 철저하게 하여 범법행위를 적발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거부하거나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 방법의 부작용은 범죄가 의심되는 사고에 대한 보험금의 지연지급과 보험금의 불지급으로 인하여 보험사에 대한 대외공신력이 약화되고, 일반인의 보험사에 대한 불신이 증가되는 것이다. 이러한 부작용이 생기자 정부는 보험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개개 회사의 자구노력과 함께 업계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이에 호응하여 적극적 대응방안이 나오게 되었다.

손해보험업계에서는 1996년 삼성화재를 시작으로 보상조직 내에 보험범죄 전문조사조직인 특수조사팀(SIU, Special Investigation Units)을 설치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현대해상, 동부화재, 제일화재, LG화재의 순으로 특수조사팀을 설치하여 보험범죄의 적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직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은 보험사들도 보상센터 내에 전직 수사관이나 교통경찰관을 채용하여 전문적인 조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주로 손해보험업계를 중심으로 대책이 나오고 있는 것은 손해보험의 경우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등 보험금을 노린 범죄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많기 때문이며, 상대적으로 생명보험의 경우 이에 대한 관심이 적은 편이다.

그러나 개별회사 차원의 보험범죄 방지노력은 그 한계가 있으며, 보험범죄가 전문화, 지능화, 집단화되면서 체계적인 공동대응의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자, 금융감독원의 권고에 따라 2000년 7월 손해보험협회 내에 보험범죄방지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고, 그 산하에 보험범죄신고센터와 특별조사반을 두어 특수보험범죄, 집단적 보험범죄, 조직적 보험범죄에 대처하였으며,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이를 바탕으로 2002년 3월에는 보험범죄방지센터로 확대 개편하였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조사실을 두고 보험범죄방지 관련 정책 수립, 보험범죄 기획조사 및 조치, 보험범죄 조사기법 개발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 표준약관 제28조의 제2항은 1994년 12월 22일에 신설되었다.

2. 문제점

현재의 보험범죄에 대한 조사는 본격적인 수사가 행해지기 전에 보험사의 사고조사에서부터 시작된다. 보험사의 조사는 수사권이 있는 상태에서의 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우선 가입자의 고지의무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등에 대한 회사의 조사에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동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보험금 수익자의 입장에서 또한 보험가입을 범죄 목적으로 하였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수사권이 없는 보험회사에서 어느 정도 진실을 밝힐 수 있을지 의문이다. 조사는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대부분 탐문에 의하거나 관련 자료를 열람하는 수단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자료의 열람과 관련하여 병원의 진단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면 보험범죄를 적발하기 쉬울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협조를 통하여 필요한 경우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면 보험범죄를 적발하고 불법한 급부를 막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의 기록 열람²¹⁾에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조사과정에서의 개인의 인격 내지 명예의 침해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보험범죄를 목적으로 한다면 건강보험카드를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충분하지는 못하다.

수사기관과의 업무 협조관계도 문제가 된다.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이 조사를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사고경위에 대하여 경찰과의 업무협조가 되지 않아 불필요한 조사에 시간을 쓰게 되는 낭비가 발생한다. 경찰의 경우 조서공개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협조가 잘 되지 않는다. 그러나 경찰의 업무를 위해서는 보험회사 등에 업무협조를 요구하며,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협조하여야 한다. 이처럼 일방적 관계에서 협조관계로 나아가 경찰과의 업무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보험사고의 조사가 쉬워지고, 경비와 시간의 절약을 가져와 신속한 사고처리로 보험계약자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으며 보험범죄의 효과적인 인지에도 도움이

21) 현재 공식적으로는 보험회사에서 공문을 발송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의 열람을 요청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보험공단에서는 민원제기 등의 이유로 내부적으로 열람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금융감독원 및 보험업계가 보험범죄 정보에 대한 유기적인 조사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조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보험범죄 조사 유관기관과의 조사협조체제의 강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보험범죄에 대한 조사와 관련하여 보험실무자인 보험회사측과 수사기관의 밀접한 정보교환이 요구된다. 실제의 사건에서 보험사가 사건해결에 기여한 경우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우는 대부분 고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다수의 보험에 중복가입한 후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 보험금지급을 위한 조사과정에서 나타나는 수가 있으며, 보험사간 정보공유가 되면 더욱 쉽게 찾아낼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의 보험범죄 수사상 해결방안은 아직 미흡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아직 수사기관이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보험사에서도 이미지의 실추 등을 고려하여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경찰과 협조하여 수사를 하면 보험금 지급에 관하여 당사자와 많은 분쟁을 야기할 것이고, 이런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게 되면 보험회사의 신뢰에 악영향을 미쳐 영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보험사고에 대한 신고를 기피하고 소극적인 처리자세로 말미암아 문제가 커지게 된다.

3. 전담수사반의 편성

보험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관련부처의 유기적인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보험범죄의 경우 방치할 경우 전국민이 피해자가 되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막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우선 보험범죄문제에 대한 종합적 대응책 마련을 위해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산하에 보험범죄에 대한 종합적 조율을 할 수 있는 협의체를 둘 필요가 있다. 이 협의체에는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관련부처의 관계자,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국민건강관리공단, 보험심사평가원 등 민간기관과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협의체의 회의는 1년에 3-4회 정도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중요 사안에 대해 논의하고 보험범죄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결정된 정책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각 부처에서 자

신의 부서에서 할 일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보험범죄에 대한 대처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경찰의 역할이 중요하다. 경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경찰청에 보험범죄를 전담하기 위한 적어도 과단위의 전담부서를 두어 보험범죄문제에 대하여 상황판단을 하고 대응방안에 대하여 종합적인 분석을 통하여 정책을 결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각 지방경찰청별로는 보험범죄 전담반을 두어 기획수사 등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주요 경찰서에도 보험범죄 전담반을 두어 상시 보험범죄에 대한 수사를 하도록 한다. 보험범죄 수사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전담반의 요원에게는 교육을 통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교육을 받은 요원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보험범죄를 전담하는 부서에서는 보험범죄에 대한 분석과 프로파일링 등을 통해 자료를 축적하고 이들 자료를 전문요원들이 공유하도록 하여 업무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보험범죄에 대한 조사는 각 보험사의 특수조사요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사시 이들과의 협력도 중요하다. 아직 우리나라는 민간조사원 제도가 도입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보험범죄 수사시 이들이 수사관과 동일한 자격으로 수사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재판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에서 보험회사의 조사원과의 협조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도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보험사의 직원이 수사의 전면에서 활동하는 것은 곤란하고, 참고자료의 제공과 강제수사가 아닌 임의수사시 도움을 주는 정도의 협조가 적당할 것으로 보인다. 궁극적으로는 광범위한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조사원의 업무와 자격 등이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보험범죄에 대한 수사를 위해서는 과학적인 지식과 장비의 도입 또한 매우 중요하다. 과학장비를 갖추으로써 효과적으로 범죄를 수사할 수 있으며, 인권침해의 시비를 막으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비의 도입 또한 매우 중요하다.

4. 조사의 효율화와 민간조사원 제도의 도입

조사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민간조사원²²⁾ 제도의

도입도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OECD회원국은 대부분 민간조사원제도가 있는데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활동하고 있다. 법률전문 민간조사원은 주로 소송사건을 전문으로 변호사들이 소송을 위해 필요로 하는 증거를 수집하거나 피고의 변호를 돕기 위해 증거, 증인을 확보하는 등의 일을 하며, 업무와 관련하여 법정에서 증언을 하기도 한다. 보험과 관련해서는 주로 보험금을 노리고 자해행위 등 보험사기를 행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조사를 시행한다. 미국 대부분의 주와 프랑스, 스페인, 캐나다, 독일, 호주, 싱가포르 등 상당수의 국가들이 엄격한 자격시험과 훈련을 거쳐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민간자격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민간조사원을 할 수 있다. 민간조사원은 의뢰인의 이익보호를 위해 사설경호, 경비용역, 신용정보서비스, 심부름센터, 경영컨설팅을 망라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것이 광의의 ‘보안’개념으로 정의된다. 이중 ‘경제보안관’으로서의 민간조사원의 역할이 특히 강조되고 있다.²³⁾

우리나라에서는 변호사만이 유일하게 거의 제한 없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민간조사와 관련하여 신용정보 조사업이 채무회수 목적이라는 제한은 있으나 채무자의 자산 및 소재조사를 할 수 있는 등 합법적으로 상대를 조사할 수 있는 일부 업무를 허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업종 또한 사업체의 조사에 국한될 뿐 개인에 대한 조사는 금하고 있고 최저 출자금 규정으로 진입장벽이 높아 개인이 진입하기 힘든 상황이다. 행정사(行政士)의 경우도 일부 조사업무를 허가하고 있으나 허가영역범위는 불확실하다.

민간조사업무에 관해 언급을 하고 있는 현행 ‘신용정보보호법’에는 소재 파악, 사생활 조사, 탐정의 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신용정보보호법 제26조). 그러나 현실적으로 컨설팅이란 간판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 그 한계를 분명하게 긋기는 어렵다. 2000년 ‘한국민간조사사(PI) 검정협회’가 생기고 탐정을 의미하는 ‘민간조사사’ 아카데미가 설립되고 벌써 수많은 사람들이 협회가 발행하는 민간조사사 자격증을 받고 보험회사, 변호사 사무실 등에 진출, 보험사기 조사, 법정사건 조사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이처럼 실무에

22) Private Investigator를 번역할 때 과거에는 탐정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였으나 근래에는 이를 직역하여 민간조사원이라는 말도 많이 사용하고 있다. 탐정이 범죄수사와 관련하는 인상을 주고 있어 최근에는 민간조사원이라는 말이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법안에도 탐정이란 용어 대신 민간조사원 또는 민간조사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23) 주간동아, 제348호, 2001. 2. 27.

서는 민간조사라는 사회적 요구를 적극 수용하고 있으나 법적인 근거가 박약하여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이들의 주요 업무는 개인의 사생활 조사업무를 벗어나 경제범죄 수사, 해외도피범인 송환, 보험범죄 수사, 항공기 사고 조사 등 전문적인 분야로 진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OECD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외국의 민간조사업이 이미 컨설팅 등의 업종으로 지점을 설립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형식적으로 민간조사업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들 외국인의 조사업은 불법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보험사기 관련 조사와 관련하여 보험범죄를 명확히 규정하고 조사와 관련한 법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은 조사에서도 명백히 나타나고 있다. 조사결과 보험사들이 특히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데 손해보험사의 91.6%, 생명보험사의 85.7%가 보험범죄에 관한 법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²⁴⁾ 특히 손보사는 법제정이 필요한 이유로 보험사기 조사행위의 근거마련을 가장 많이 들고 있으며 (52.2%),²⁵⁾생보사도 보험사기 방지시스템의 체계화(40.0%) 다음으로 많은 답을 하고 있어(30.3%)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험범죄에 대한 법규정 제정시 보험사기국에 대한 조사권 부여와 관련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 전체의 손보사는 100%, 생보사는 95.2%를 차지하고 있어,²⁶⁾ 조사권을 부여할 필요에 대하여는 의견일치를 보이고 있다. 보험사기 조사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는 손보사와 생보사가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손보사는 검찰청 내에 보험사기 전담팀 설치와 검찰, 경찰, 보험회사 등이 공조하는 협의체 운영이 각각 50%로 나타나고 있으나 생보사는 협의체 운영이 57.1%로 높게 나타난 반면 검찰청 내 보험사기 전담팀 설치는 9.5%로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대신 손보사에서는 응답이 전혀 없었던 의료기관 및 정비업체의 자료제공의무 부여가 28.6%, 검찰파견이 4.8%로 나타나²⁷⁾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가 각각 다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민간조사원제도의 도입은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더 클

24) 안경철·조혜원, 김경환, “국내외 보험사기관리 실태분석 : 선진사례 및 설문분석을 중심으로,”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2002, 3, 101-102면.

25) 앞의 책, 102면.

26) 앞의 책, 104-105면.

27) 앞의 책, 105면.

것으로 생각된다. 이 경우 보험범죄 수사시 경찰 및 검찰의 비전문성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각 보험범죄에 대한 수사는 개별 검사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때문에 보험범죄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담당 검사는 처음부터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 보험범죄에 대한 자료도 축적되어 있지 않고 저마다 따로 관리해 사건이 발생하면 일단 보험범죄가 무엇인지부터 시작해야 하는 비효율적 대응체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보험범죄 전담조직이 구성된다면 이러한 수사의 단절은 피할 수 있을 것이며,²⁸⁾ 나아가 지속적인 관계유지를 통하여 협력체제가 강화됨으로써 효율적인 보험범죄 통제가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2개의 민간조사원 관련 법안²⁹⁾에 대한 논의를 거쳐 법안의 통과될 것이 요구된다.

5. 정보공유 체제 구축

가. 정보공유의 필요성

보험범죄가 지능화, 조직화되면서 같은 조직이 여러 건의 보험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범죄예방과 적발 및 방지를 위한 정보공유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손해보험과 생명보험협회는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고액계약 및 사고보험금 지급조회시스템을 개선하여 보험범죄 유의자 온라인 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정보유출에 따르는 민원발생가능성을 축소하고 또한 정보의 효율성 및 활용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보험범죄가 조직화되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프로파일링 기법을 통해 관련정보를 분류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범죄의 적발에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문제되는 보험의 가입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범죄예방의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손해보험협회는 근로복지공단과 협력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를 확대하여

28) 안철경, “모럴헤저드의 경제학적 이해 및 효과적 대응수단 연구 -법제적 측면의 인프라 구축을 중심으로,” 보험개발연구, 제11권 제1호, 2000. 3, 56-57면.

29) 이상배 의원 대표발의안과 최재천의원 대표발의안

금융정보를 집적하고 있는 은행연합회를 비롯하여 납세정보를 갖고 있는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하다. 또한 동종의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한 자료를 집적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공동노력의 그 성과는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어 효율적인 방지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보험범죄자들은 생·손보 구분 없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나 보험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의 운영이 생·손보 분야로 구분되어 별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주체도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그리고 재보험회사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생보사와 손보사는 각기 자기 분야에 대한 정보자료만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험범죄에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게 된다. 또 정보시스템 구축과 정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비용지출이 중복적으로 이루어져 경제적 효율성이 떨어진다.

보험범죄 방지를 위한 조사·연구활동도 생보협회, 손보협회, 보험개발원 등에서 각각 수행되고 있지만 이러한 조사·연구가 조직적이며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상호 연계가 되지 않고 있어 상호보완과 상승작용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 보험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전적인 예방책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제도가 사후적인 정보의 제공에 목적을 두고 있어 보험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없는 구조적 모순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제도별 연계성이 미약해 제기능을 발휘할 수 없으며, 비효율적이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2005년 8월 보험계약을 이용한 사기적 행위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조사근거를 명확히 하고, 금융감독원장이 보험관련 조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가 등에 대하여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험계약을 이용한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근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되었다.³⁰⁾ 이 가운데 가장 중심적인 것이 금융감독원장이 보험관련 조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이다(안 제162조의2 신설). 이는 정보의 공유를 통하여 보험범죄를 막기 위한 것으로, 이들 기관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질병정보 등을 제공받아 이를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

30) 민주당 김효석 의원 대표발의.

한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이다. 이는 보험범죄 가운데 사고와 무관한 기존의 질병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와 허위진단서의 발급 등을 통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를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나.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과 유사사례

정보공유의 문제점은 개인의 정보가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발의한 측은 이러한 우려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정보제공요청권은 보험을 악용하여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끼치는 보험사기자들로부터 선의의 피해자인 보험 가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완조치로 금융감독위원회가 보험사기를 조사할 때 범죄혐의가 높은 경우 혐의를 입증하여 보험의 누수를 막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가기관인 금감위 역시 비밀보호유지 의무가 있기 때문에 민간보험사나 보험설계사에 자료가 누출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³¹⁾ 조사유형은 고의 사고 유발, 사고위장 및 보험사고를 현저하게 과장하는 행위,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보험사고의 발생시기를 조작하는 행위, 그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행위 등으로 구체화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보험사기 행위에 대한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혐의자의 질병정보 등에 관한 자료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의견을 밝혔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요청할 자료는 엄격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는 개인정보이므로 이를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최소한으로 억제할 필요가 있으나, 정부기구인 금융감독위 소속 공무원이 비밀유지 의무가 있으므로 개인정보유출 문제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되어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결론짓고 있다.³²⁾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개인의 치료와 질병에 관한 자료는 가장 민감한 사생활의 일부이며 이를 보험조사에 제공하는 것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커다는 점에서 반대하고 있다. 또 의료법상으로도 의료기관 종사자가 치료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열람,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형평성을 생각할 때 자료제공은 문제가 있다고 한다. 실질적으로 반

31) 김효석의원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hskim.pe.kr/> 참조.

32) 현성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2005. 11, 7면.

대의 가장 큰 이유는 악용의 가능성이다. 즉 개인의 정보보호와 관련하여 보험사기조사라는 특수성이나 금감위의 비밀유지 의무를 감안하더라도 정보의 오남용을 막을 장치 없이 허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³³⁾ 시민단체와 의료관련 노동조합들은 영리를 추구하는 보험사의 필요에 의해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반대이유이다.

즉 정보제공요청권을 통하여 자료를 축적함으로써 우량고객을 상대로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을 통해 의료보험을 2원화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다. 또한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우려가 짙게 깔려 있다. 개인의 정보는 보호의 대상이다. 현행법에서도 개인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범죄수사나 재판에 필요한 경우, 법률이 규정한 업무수행을 위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외부에 제공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개인의 정보공개에 대하여 제한규정을 두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공개되는 경우도 있다. 개인의 질병정보는 재판과정에서 공개되는 경우가 있다. 현행 의료법은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개인의 진료기록을 다른 사람에게 내주지 못하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다.³⁴⁾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꼭 필요한 경우 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병원에 의료기록을 내도록 ‘문서송부촉탁’을 할 수 있다. 실제 재판과정에서 보험사에서는 필요한 경우 이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며, 보험사가 요청하면 재판부는 관행적으로 병원에 교통사고 피해자의 진료기록 제출을 요청하고 있다. 이 조항의 근거가 되는 민사소송법 318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없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진료기록을 제출할 것인가의 여부는 병원이 법에 의하여 판단할 문제이며, 법원의 요청은 법적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병원이 의료법 위반여부를 검토하여 제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법원의 요청이 있어도 개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의료기록을 제출하면 의료법에 저촉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대부분의 병원은 법원의 요청을 강제적인 것으로 받아들여 제출요구가 있을 때 당사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병원이 의료기록을 제출할 때 당사자의 의사를 묻지 않는 것은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³⁵⁾ 따라서 개인의 정보보호를 어떻게 철저히 할 수 있을

33) 열린우리당 우제창 의원.

34) 의료법 제20조.

것인지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관건이 될 것이다.

환자의 질병정보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권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문제의 소지가 있다. 자료제출요청의 근거가 되는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행위’가 광범위하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는 개인의 사생활의 보호 및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헌법(헌법17조, 37조) 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특히 국민의 신뢰를 상실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보험사기의 방지를 위한 자료제출 요청권을 인정하되 개인의 비밀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자료제공 요청과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는 사안으로 가장 유사한 것이 수사를 위한 자료요청이다. 수사를 위한 자료요청은 범죄수사를 위한 것이며, 그 목적도 범죄수사에 국한된다. 그러나 이 경우 자료제공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다. 1997년 12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법률 제5493호)이 제정된 후에는 금융거래 자료를 통하여 정확한 거래내역과 거래에 관계된 관련자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자료의 활용에 대하여는 2001년 9월 제정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6516호)에 의하면 불법재산 또는 자금세탁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 조세 및 관세 범칙사건의 조사나 금융감독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은 특정금융거래정보를 검찰총장·국세청장·관세청장 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제공하며, 검찰총장·경찰청장·국세청장·관세청장·금융감독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³⁵⁾

이 밖에 세무관련 자료를 통한 자산상태의 파악³⁷⁾과 관련하여 수사대상자의 과거 부동산에 대한 취득·양도 및 현재의 소유현황과 소득세에 대한 소득의 종류, 사업자명, 관할세무서, 수입금액, 소득금액, 소득세 납부실적 등을 확인한다. 국세청의 국세데이터베이스관리규정은 부동산의 취득, 양도 등의 자료가 외부기관에 제공되는 경우를 ‘부동산투기사범’과 ‘세금포탈’에 대한 단속목적을 위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마약류

35) 한겨레신문, 2006. 2. 6.

36)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4항.

37) 서울지방검찰청, 선진 마약수사기법 사례, 2003년, 37면.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마약사범에 대한 불법재산의 몰수·추징은 세금포탈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국세데이터베이스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자료의 이용을 위해 인접한 세무서 세원관리과에 공문으로 요청하며, 세무서는 지방국세청을 거쳐 국세청 본청으로부터 승인절차를 받고 자료를 제공하게 된다.

수사와 무관하게 자료제공 요청을 할 수 있는 경우는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들 수 있다. 이 법 제35조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의 관리·운용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고등교육기관, 금융기관,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보험업법 개정안 외에도 자료제공요청을 할 수 있는 법이 있으나 보험업법 개정에 반대가 집중되는 이유는 개인정보가 보험사에 유출되어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러한 우려가 기우라 할지라도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다. 개인정보보호방안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보험사기와 관련한 개인정보요청권도 수사시 개인정보요청에 준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업무의 성격상 보험사기의 조사도 수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료 역시 수사에 준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다. 현재 금융감독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0조에 따라 비밀엄수의 의무가 있고, 이 업무를 금융감독원이 위임받아 행사하는 경우에는³⁸⁾ 당해 직원은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에 의하여 비밀유지의무가 있으므로 개인정보유출시 처벌을 받는 등 제도가 구비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자료요청권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부여하고 있으나, 안 제162조 제1항이 조사권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부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자료요청권도 금융감독위원회에 부여하는 것

38) 보험업법 제19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 100조 제1항은 보험업법 제162조에 따른 금융감독위원회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에 대한 조사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정도의 규정만으로도 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불법적으로 유출한 경우의 처벌은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정보의 통합과 공동활용은 필연적으로 정보유출의 가능성을 높이며, 정보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게 한다. 정보화의 진전으로 많은 자료들이 집적되고 활용될 수 있게 되었지만, 그 부작용에 따른 정보보호의 필요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특히 범죄관련 정보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가 많으며, 국가의 활동과 관련하여 유출되어서는 아니 될 정보들도 많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때에는 이러한 정보의 보호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종래 우리 사회에서는 심각하게 인식되지 않았으나, 1990년대 이후에는 개인정보보호의 문제가 매우 치열한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다.³⁹⁾ 따라서 이제는 정보의 수집과 보관 및 검색에는 반드시 개인정보 보호장치를 갖추 것을 요구하고 있다. 범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효율성만을 추구한다면 개인의 프라이버시 등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보의 수집과 관리 및 검색은 엄격하게 법적 통제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하며, 확실한 정보보호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획기적인 진전이 없이는 정보의 공동활용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개인정보보호의 측면에서 제한될 수도 있다.

정보의 집적과 공유는 효율과 비용절감의 측면에서는 많은 장점이 있지만, 일반 국민의 기본적인 정보가 집적됨으로써 그 자료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해킹과 같은 방법으로 비인가자가 집적된 정보 및 자료에 접근한다면, 개인의 프라이버시의 침해 등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위험이 있다. 각 정보망을 관리하는 기관에서는 이러한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시스템에 대한 보안관리 수행체계를 정비하고 보안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자체의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러한 자체 보안관리 상태

39) 1990년대에 진행되었던 전자주민카드 도입시도와 새 주민등록증 갱신발급과정에서의 지문채취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나 유전자정보은행 설립을 둘러싼 논란이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이상용, 유전자정보의 보호와 이용통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91면 이하 참조.

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외부의 해킹에 대비한 완벽한 방호벽을 구축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뿐만 아니라 종합자료검색시스템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VI. 맺는 말

보험은 위험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보장하여 개인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사회의 안정을 도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을 이용하여 이익을 취하려는 보험범죄는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일이 되고 있으며, 이는 현대사회의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보험범죄에 대하여는 과거와 같이 보험금을 목적으로 하는 살인처럼 흉악하고 잔혹한 범죄에만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사소한 범죄행위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적극적으로 범죄를 통하여 이익을 얻으려 하지는 않더라도 우연히 사고가 발생하면 그 기회에 이익을 얻으려는 심리상태는 누구나 가질 수 있는데 이는 보험범죄의 피해자가 결국 모든 국민이라는 것을 망각한 데서 나타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으며, 보험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

보험금을 노린 강력범죄 뿐만 아니라 연성보험범죄도 금지되고 처벌되는 행위라는 것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보험금을 부당한 청구를 통하여 이득을 얻는 것을 용인하는 경우 우리 사회의 기본이 되는 도덕과 윤리의 파괴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며 현대 자본주의의 기본이 되는 신용사회가 흔들릴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범죄를 사회의 기본을 위협하는 범죄로 보고 보험범죄를 방지하고 조사하기 위하여 국가와 보험업계가 유기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범죄의 예방과 범죄자의 처벌은 국가의 업무이지만 보험범죄의 특성상 범죄로 처벌하기 힘든 가벼운 범법행위가 많기 때문에 자료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보험업계와의 연계하여 이러한 범법행위를 가려내어 처벌할 것은 처벌하고, 이익을 박탈할 것은 박탈함으로써 범법행위를 통하여 이익을 얻으려는 사회적 풍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의 증가와 사회적 위험이 늘어나면서 보험범죄가 조직화되고 전

문화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는 수사도 전문화할 필요가 있다. 전문화된 수사체계를 갖추고 보험범죄자에 대한 자료를 축적하게 되면 보험범죄에 대한 효율적 수사가 가능할 것이다. 업계에서도 사고조사와 보상업무 분야의 인력을 강화하고 보험범죄의 적발사례나 범죄 유형 등을 연구·분석하여 자료를 축적하여 수사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전문화된 수사기관과 보험업계가 협조를 강화하면 보험범죄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 인식될 것이며, 보험범죄의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경찰청, 경찰백서, 2001-2005.
- 권홍구, 보험사기 적발 및 방지대책의 개선방안 연구,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2001.
- 김경원, 산재보험 제도 개선방안 연구 :선진국의 사례 비교를 통해 본 보험사기 관리,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2005. 2.
- 김보환·정덕영, 자동차보험 관련 범죄의 실태와 대책, 민생치안, 제13권 제3호, 통권59호, 2004·여름.
- 김성태, 보험사기에 대한 법적·제도적 대응방안, 생명보험협회 세미나, 2001. 3.
- 김영규, 교통사고 보험사기 수사와 대응, 수사연구, 제23권 8호, 통권262호, 2005. 8.
- 김영중, 도덕적 위험방지를 위한 보험범죄 사례분석, 손해보험, 제359호, 1998.9.
- 김용경, 교통사고와 관련된 도덕적 위험의 현황과 대처방안 - 상해보험범죄를 중심으로-, 한양대 금융대학원, 석사논문, 1997.
- 김용덕·안철경, 보험사기조사의 효과성에 관한 실증연구 : 미국의 주 보

- 험사기국을 중심으로, 보험학회지, 제61집, 2002.4.
- 김원배, 보험금관련 살인범죄 실태와 수사 1, 수사연구, 제23권 6호, 통권 260호, 2005. 6.
- 김헌수, 보상전문가의 지식을 이용한 보험사기의 조기경보 모형의 개발에 관한 연구, 리스크관리연구, 2000. 6.
- 김헌수, 비통계적 링크분석을 활용한 보험사기의 효과적 적발방법 연구, 보험개발연구, 통권39호, 2003.2.
- 김헌수, 보험가입자의 연성 보험사기 행위에 대한 실험 분석적 검토, 보험개발연구, 통권45호, 2005.2.
- 김형기, 보험범죄의 현황과 그 대응방안, 상사법연구, 제18권 제2호, 1999.
- 김호승, 보험범죄 유형별 수사, 수사연구, 제21권 9호, 통권239호, 2003. 9.
- 내남정, “보험범죄의 현황과 효율적 대처방안”, 손해보험 제361호, 1998. 11.
- 내남정, 보험사기 조사팀의 활성화를 통한 보험사기 방지방안, 손해보험, 제377호, 2000년 3/4월호.
- 대한손해보험협회·한국형사정책연구원, 보험범죄 형사판례집, I - II, 2002.
- 문국진, 보험범죄의 특징, 손해보험, 대한손해보험협회, 1997. 12.
- 박미숙, 금융감독기관의 범죄조사 효율성 제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 방진선, 보험사기에 대한 법적대응력 제고, 생명보험, 제279호, 2002. 4.
- 방진선, 재해를 악용하는 보험사기, 생명보험, 제278호, 2002. 3.
- 서영제, 보험범죄에 관한 연구, 법무연수원, 1988.
- 신수식, 보험제도의 도덕적 해이 : 산재보험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2002.
- 신의기, 보험범죄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과 방지방안, 형사정책연구소식, 제85호, 2004. 9·10.
- 안경옥, 한국의 보험범죄의 실태 및 대책, 형사정책연구, 제14권 제2호, 통권 제54호, 2003 여름.
- 안철경, 국내외 보험사기관리 실태분석 : 선진사례 및 실무분석을 중심으로, 보험개발원, 2002.

- 안철경, “모럴헤저드의 경제학적 이해 및 효과적 대응수단 연구 -법제적 측면의 인프라 구축을 중심으로,” 보험개발연구, 제11권 제1호, 2000. 3,
- 안철경 · 박일용, 보험사기 성향 및 규모추정(손해보험을 중심으로), 보험개발원, 1999. 7.
- 안철경 · 박일용, 보험사기 적발 및 방지방안, 보험개발원, 1999. 11.
- 안경철 · 조혜원, 김경환, “국내외 보험사기 관리 실태분석 : 선진사례 및 설문분석을 중심으로,”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2002, 3.
- 양두석, 최근 보험범죄의 문제점과 보험업계의 대응노력, 손해보험, 제443호, 2005. 10.
- 오경식, 보험사기 관련 법률과 외국의 법제, 수사연구, 제21권 9호, 통권 239호, 2003. 9.
- 윤용로, 교통사고 보험사기 실태와 방지방안, 수사연구. 제23권 8호, 통권 262호, 2005. 8.
- 이경주, 보험사기의 구조에 관한 이론적 연구, 보험학회지, 제63호, 2003.
- 이기형, 우리나라의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누수규모 추정 및 보험사기 적발에 따른 예방효과 분석, 보험개발원, 2005.
- 이병희, 보험범죄론, 형설출판사, 2001.
- 이병희, 보험범죄에 관한 연구 -생명보험범죄를 중심으로-, 청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12.
- 이병희, 보험범죄와 범죄인의 특성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제2집, 한국법학회, 1999.1.
- 이병희 · 탁희성, 보험범죄의 형사판례 분석, 대한손해보험협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
- 이상용, 유전자정보의 보호와 이용통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 이윤호, 보험사기에 대한 모니터링효과의 국제비교, 리스크관리연구, 2000. 6.
- 이윤호, 보험사기에 대한 수사권 문제와 최적제재에 관한 연구, 보험학회지, 제61호, 2002.
- 조해균, 도덕적 위험관리, 보험감독원, 1992.

- 조해균, 도덕적 위험과 보험범죄, 보험조사월보, 제141호, 1989. 11.
- 조해균, 보험범죄의 발생원인과 그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학회지, 1990. 3.
- 조해균, 생명보험 Moral Risk 관리방안, 보험개발연구, 제22호, 1997.
- 조해균 · 양왕승, 범국가적 차원의 보험사기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개발연구 제33호, 2001. 2.
- 조현빈, 보험사기의 가해적 특성과 제재 효율성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0호, 2005. 6.
- 탁희성, 보험범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 황만성, 공보험범죄의 실태와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
- 황만성, 국민건강보험과 관련한 보험범죄의 문제점과 대책, 의료법학, 제5권 제2호, 2004. 12.
- 황만성 · 신의기 · 탁희성, 우리나라 보험사기 방지 선진화 방향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

2. 영미문헌

- Artis, Manuel, Modelling Different Types of Automobile Insurance Fraud Behaviour in the Spanish Market, Insurance : Mathematics & Economics, Vol.24, No.1 1999.
- Bernstein, Andrew S., Tackling Disability Insurance Fraud, National Underwriter , Vol.101, No.17 1997.
- Birds, John R., Fraud and Composite Insurance, Journal of Business Law, 1999.
- Brostoff, Steven, Supreme Court to Test RICO's Reach for Insurance Fraud, National Underwriter , Vol.102, No.26, 1998.
- CAIF, A Statistical Study of State Insurance Fraud Bureaus: A Quantitative Analysis, December 2003.
- CAIF, Study on SIU Performance Measurement, June 2003.
- Carris, R. and Colin, M., Insurance Fraud and the Industry Response, CPCU Journal, Summer 1997.

- Crocker, K. and Morgan, J., Is Honesty the Best Policy? Curtailing Insurance Fraud through Optimal Incentive Contract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106, Issue 2, 1998.
- Henchliffe, Scott, Insurance Claim : Fraud and the Duty of Utmost Good Faith, Insurance Law Journal, 1997. 9.
- Insurance Frauds Bureau(IFB), Fighting Organised Insurance Fraud: Protecting Honest Customers, 2006.
- Insurance Frauds Bureau(IFB), New York State Insurance Fraud Bureau 2005 Annual Report, 2006.
- 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 Insurance Fraud, March 2006.
- Ken Dornstein, Accidentally, on Purpose : The Making of a Personal Injury Underworld in America, St. Martin's Press, 1997.
- Laurence, Arnold, FBI Begins Investigation Into Insurance Fraud Bureau to Look for Patterns of Abuse, Washington Post. Bloomberg News, Thursday, May 5, 2005.
- Powers, Joseph K., Pulling the Plug on Fidelity, Crime, and all Risk Coverage: the Availability of Rescission as a Remedy or Defense, Tort & Insurance Law Journal, Vol.32, No.4, Summer 1997.

3. 참고 웹사이트

- <http://www.abi.org.uk>
- http://www.converium.com/media/Converium_Insurance-fraud_200305b.pdf
- http://www.fsa.gov.uk/pages/Library/Communication/Speeches/2005/0627_ey.shtml
- <http://www.iasiu.org/cifiMain.php>
- <http://www.iii.org>
- <http://www.insurancefraudbureau.org>
- <http://www.ircweb.org/About/Index.htm>

<http://www.iso.com/products/2500/prod2512.html>

<http://www.kidi.co.kr/kc/terms/index.asp>

<http://www.kysiu.com/Page.html>

http://www.naic.org/committees_d_antifraud.htm

<http://www.nicta.org>

<http://www.nyc.gov/html/nypd/html/bureau.html>

<http://www.sfo.gov.uk/about.asp>

<http://www.stopfraud.org/history.html>

http://www.washingtonpost.com/wp-dyn/content/article/2005/05/04/AR2005050402377_pf.html

Insurance Crime of Korea

Shin, Eui-Gi*

Insurance crime affects everyone. When people commit insurance crime, it is not just the insurance industry that pays the price. Everyone has to pay more than they should for insurance. A full 10% to 15% of insurance premiums for home, car and business insurance go to pay for false or insurance fraud. Law-abiding policyholders end up having to pay for the dishonesty of others. In fact, insurance crime costs of Korean more than 100 billion won a year. Organized insurance crime is an attractive avenue for criminals because it is a low-risk crime with high potential for profit. Insurance crime cases are very complex and difficult to prosecute, so the criminals very seldom suffer any serious consequences for their crimes.

In continuing efforts to put an end to insurance crime, government, people, systems and networks in place all across the country to detect and prevent this type of crime. Insurance companis and insurance asociations develop an increased awareness of signs of possible insurance crime. They continue to be educated about proper documentation and developing trends. Korean government has been successful in battling insurance crime, but there is more to be done. With some simple changes to legislation, more and stronger relationships with government agencies both in Korea and internationally, and the help of people, can minimize insurance crime.

주제어 : 보험범죄, 범죄정보공유, 수사체계, 보험사기

Keywords : insurance crime, insurance fraud, investigation system, co-ownership of information

* Senior Research Fellow, Korean Institute of Criminal Justice Policy, Ph.D. in Law